

# 2025 아트코리아랩 예술-기술 글로벌 유통 지원 공모

문화체육관광부와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아트코리아랩은 아트&테크 분야의 새로운 시장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<2025 아트코리아랩 예술-기술 글로벌 유통 지원> 공모를 진행합니다.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는 예술-기술 시장 발굴 및 진출을 희망하는 예술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## □ 공모개요

- (공모명) 2025 아트코리아랩 예술-기술 글로벌 유통 지원
- (공모목적) 국내 융합예술 우수 작가·작품의 글로벌 유통을 지원하여 새로운 예술-기술 시장을 발굴하고 관련 생태계 자생력 도모
- (공모기간) 공모 게시일 ~ 2025. 3. 5.(수) 15:00

## □ 공모내용

- (사업기간) 2025. 2. ~ 2025. 11.
- (지원대상) 예술기술 융합 작품의 글로벌 유통이 확정된 예술단체
  - \* 해외 예술-기술 마켓, 페스티벌, 학술대회 등 유통처는 별도의 제한 없음
  - (\* 단, 공연, 시각 장르 기반의 극장, 미술관 등은 제외)
- (지원자격)
  - 예술-기술 융합 작품 및 프로토타입의 전시/시연/발표 등 글로벌 유통이 확정된 예술단체\* \*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단체
  - 한국 예술단체로 전체 참여 인원의 해외여행 및 비자 발급 결격 사유가 없는 단체
- (제외대상)
  - 예술-기술 융합이 드러나지 않는 단순 공연, 전시의 경우 지원 불가
  - 해외 예술-기술 기관 리서치, 교류 행사 등 단순 참여 지원 불가
  - 예술단체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
  - 예술가 개인 자격으로 지원 불가
- (지원규모) 5건 내외, 총 3억원 내 차등지원 \* 건별 최대 90백만원 / 자부담 10% 필수
- (지원내용) 예술-기술 작품 해외 유통에 소요되는 직접경비\* 일부 지원
  - (\* 직접경비 예: 항공료, 숙박비, 화물 운송비 등)

○ (선정단체 의무사항)

- 선정자 대상 오리엔테이션, 성과공유회 등 필수 참여. 본 사업 참여내용을 기반으로 성과공유회에서 개인 성과 발표 가능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의무 교육 이수 및 서약서 제출
- 사업 관련 홍보물 제작 시, 문화체육관광부,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CI, 아트코리아랩 BI 등 지원사업 관련 기관 표기 필수
-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
  - \* 정산/실적보고서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지정 서식을 준용하여 작성
  - \* 보조금 정산 시 반드시 센터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이용하여 회계검사를 받은 후 정산보고서 제출
- 이나라도움을 통한 보조금 집행 필수, 정산·실적 보고, 정보공시 등 성실 이행
- 선정자는 사업과정 및 지원금 지급과 정산과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센터의 안내 및 규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, 사업 수행 시 센터 규정을 준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

□ 공모접수

○ (접수기간) 공모 게시일 ~ 2025. 3. 5.(수) 15:00까지

- \* 접수 마감일(25. 3. 5(수) 15:00)까지 이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, 15시 이후에는 입력 불가
- \* 접수 마감일 이후 최종 선정 수의 1.5배 미만 접수 시 접수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

○ (접수방법)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이나라도움([www.gosims.go.kr](http://www.gosims.go.kr))을 통해 신청 (우편, 방문, 이메일 접수 불가하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)

○ (제출서류)

구분	제출서류	제출방법
1	[필수] 이나라도움 지원신청서 및 지출 예산서 1부	이나라도움 시스템에 직접 작성
2	[필수] 공모신청서 1부 (지정서식/한글파일)	이나라도움 시스템에 첨부 제출
3	[필수] 예술-기술 페스티벌/마켓 등 참여/초청 증빙서류 1부	
4	[선택] 화물 운송 견적서 1부 * 예산에 운송비 2천만원 이상 편성 시 필수 제출	
5	[필수] 단체의 성격에 따라 아래 서류 제출	
5-1	고유번호증 사본 1부	
5-1	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국세 및 지방세, 4대보험 완납(납부)증명서 각 1부	

○ (주의사항)

- 이나라도움 이용시 회원가입 필수, 공인인증서 필요
- 시스템 관련 문의 사항(시스템 사용, 장애 신고 등)은 이나라도움 사용자지원센터 (1670-9595) 문의
- 마감 당일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접수가 안 될 수 있으니 사전제출 권장
- 예술가/단체가 간이 또는 과세사업자인 경우, 지원금은 공급가액만 편성 가능
- 동일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및 중앙문예기금(한국문화예술위원회) 중복수혜 불가
- 그 외 지자체, 문화재단, 민간재원 등 타 재원을 받는 경우 타 기관 지원금 사용계획 제출

□ 심의 및 선정

- (심의일정) 2024. 3월 2~3주(예정)
- (심의방법) 외부 전문가에 의한 서류 및 발표심의

구분	내용
행정검토	· 신청서류 검토, 서류 미비 등 결격 지원서 제외
1차 서류심의	· 외부 심의위원(3인)이 심의기준에 따라 평가 · 최종선정 인원의 2배수 내외 선정 * 접수결과 지원 규모의 3배수 이하일 경우, 서류심의를 겸한 발표심으로 대체할 수 있음
2차 발표심의	· 외부 심의위원(5인)이 심의기준에 따라 평가 (*지원자당 10분 내외 발표)
최종 결과발표	· 최종 선정자 발표 *예비 2인을 선별하여, 결격사유 발생 시 예비 인원으로 총원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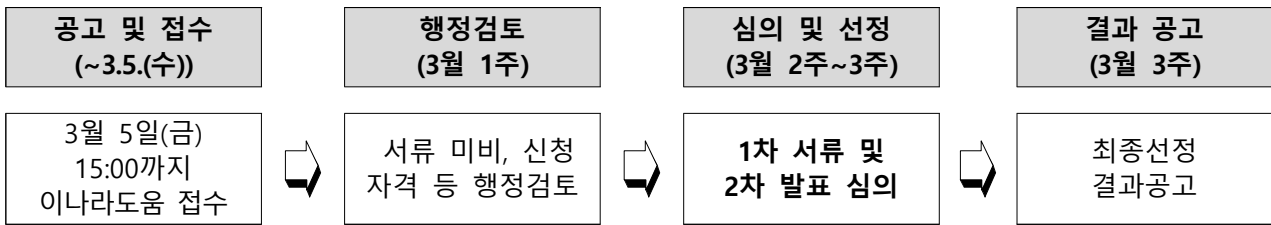
○ (심의기준)

연번	평가지표	가중치	평가내용
1	사업목표 및 계획의 타당성	30%	-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가? - 사업 내용과 계획의 필요성이 타당한가? - 사업추진 및 예산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는가?
2	수행역량 및 전문성	30%	-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? - 사업수행을 위한 적극성을 갖추었는가?
3	국내외 파급효과	40%	- 참여하는 해외 유통처의 국제 인지도는 어떠한가? - 사업 수행 결과를 통해 예술기술 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기여도가 예상되는가?

\* 동점자 발생 시, 배점이 높은 지표 순으로 고득점한 신청자를 우선 선발함 (지표 3 > 지표 2 > 지표 1 순으로 적용)

- (결과발표) 3월 3주 내, 센터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단체 개별 공지

## □ 추진 일정



\*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 □ 지원제한 대상

- 국비, 지자체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나 단체 및 소속된 자
- 「국가보조금 통합관리지침\*」이 명시하는 선정 자격에 위배되는 경우

※ 제13조 제4항

1.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
2. 제14조의2에 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

- 문화체육관광부의 「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15조의 보조금 집행 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
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
- 사업 공고일 기준 정부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(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)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
- 본 사업과 동일한 내용(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)으로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

\* 선정 이후라도 타 기관의 사업과 중복 수혜가 확인되면 지원금은 전액 환수될 수 있음

## □ 유의사항

### ○ (신청·선정 단계)

- 신청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의에서 제외(선정 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) 및 이후 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 신청 시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- 지원사업을 완료(정산확정 및 잔액반납)하지 못한 자는 지원 신청할 수 없음. 또한 지원금은 e나라도움을 통해 지급되므로 사업의 선정-집행-정산 등에 문제가 없어야 함

### ○ (예산편성 단계)

- 간이/과세사업자의 경우, 사업비는 공급가액만 편성 가능하며 부가세액을 편성 또는 집행할 수 없음

\* 부가세액은 사업비 외 자부담액으로 집행하며 예산집행 내역에 포함하지 않음

\* 고유번호증/면세사업자는 매입부가세액 보조사업비 편성/집행 가능

- 예비비,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으며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

**<지원금 집행 불가 항목>**

- 일상적인 운영 경비 : 상근직원 인건비, 사무실 임대료,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, 공과금, 전화요금 등
- 자본적 경비 : 자산취득비(교육기기, 장비, 가구, 도서 구입 등), 시설 부대비, 수선비, 전화·인터넷 설비, 홈페이지 개발비, 도메인비 등
- 해당 사업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 및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(「국가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 제 19조 등)

**○ (사업수행 단계)**

- 지원금의 교부, 집행, 정산의 의무는 신청자(단체, 기업)에 있음
- 본 사업의 보조금은 타 정부지원 사업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
- 공모 선정 후 지원금 교부, 집행, 정산은 이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됨
-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원금 집행은 이나라도움을 통해서만 가능하며,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금 집행에 대하여 정기적인 감사를 할 수 있음
- 사전에 센터 승인 없이 임의 용도 변경하여 집행한 지원금은 불인정 될 수 있음
- 사업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 취소, 지원선정 취소 등 제재가 가능함
- 사업수행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참여 의지가 없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
- 사업선정 이후 의무사항 불이행, 고의 혹은 과실 및 기타 사정으로 본 사업의 취지가 훼손되고 본 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취소 및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
- 사업점검 및 환류를 위한 만족도 조사 등 설문 요청 시 사업 참여자 전원 필수 응답 제출해야 함
-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사업종료 전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, 결과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- \* (21.1.6.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)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(프리랜서 등 포함) 성희롱·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이수 확인서 제출 의무 부과
- \* 성희롱예방교육 인정범위 : 직장내성희롱예방 법정 의무교육, 민간보조사업자 성희롱 예방 교육, 성평등 주제 관련 교육 등

**○ (사업종료 후)**

- 회계검사 및 정산·실적보고서 작성 및 결과보고서(센터 지정양식) 제출
- 사업종료 후 5년간 이력·성과 관리에 필요한 설문, 정보제공 등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함

**※ 신청서 제출 전에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」을 충분히 숙지하며, 신청서 제출 시 해당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**

**□ 문의**

**○ (공모 문의)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아트코리아랩 예술기술지원TF**

- 이메일: [akl@gokams.or.kr](mailto:akl@gokams.or.kr)

- 전 화: 02-2098-2942

※ 전화 문의는 평일(월~금) 10:00~17:00 중 가능(점심시간 12:00-13:00)

**○ (e나라도움 문의)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(1670-9595)**